

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연장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 10일	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		
	주소	전화번호		
허가사항	전용목적			
	납부기간		고지번호	
	대체산림 자원조성비	계	보전산지	준보전산지
		원	원	원
신청사항	연장사유			
	연장기간			

「산지관리법」 제19조제10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산림청장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
지방산림청장,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, 국립수목원장 귀하
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, 국립산림과학원장,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

첨부서류	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재원 조달계획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